

제286회 정례회
성 북 구 의 회

의안
번호 제41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기획위원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정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이 병 곤

1. 제안경위

- 의안번호 : 제 419 호
- 제 출 자 : 성북구청장
- 제 출 일 : 2021. 11. 10.
- 회 부 일 : 2021. 11. 17.

2. 제안이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해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하며,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및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개정

조항	기존	변경
제1조	「지방자치법」 제137조 및 제139조	「지방자치법 ¹⁾ 」 제154조 및 제156조로 변경

1)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조항	기존	변경
제6조 제1항제9호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²⁾ 」

나. 수수료 감면 대상 추가 및 신설 (안 제6조)

○ 제1항제6호, [기존 대상자에서 감면대상 추가]

기존	추가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및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73조의2(<u>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u>)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u>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도 포함한다</u>)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 신설

조항	내용
제1항제1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
제4항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를 면제한다.

2)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133호, 2021. 4. 20. 일부개정] 되어 제명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

다. 상위법 개정 등에 따른 수수료 정비 (별표, 수수료 종류 및 징수금액)

현행		개정안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³⁾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액	
(2) 공유재산 대부 신청			
(가) 신규	1건	5,000원	
(나) 연장	1건	3,000원	

3. 행정정보의 공개		3. 행정정보의 공개	
다. 행정정보의 공개 ⁴⁾		다. 행정정보의 공개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전자파일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1GB마다 8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 수정
(안 제1조, 제3조, 제6조1항,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전부개정]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의 2

3)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표준금액” 에서 해당조항(11호, 12호) 삭제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 표] “수수료” 에서 해당조항 개정

[법률 제11029호, 2011. 8. 4., 타법개정]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의 2항

[법률 제11041호, 2011. 9. 15., 일부개정]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5)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6)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7조

7)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규칙」 제28조

8)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별표 제11, 12호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 2021. 9. 30. ~ 2021. 10. 20.

라. 비용추계 : 미첨부사유서

5. 검토의견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전부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제명을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대상에서 법률 제110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을 추가 하였으며,

수수료 면제 대상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

명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 창구를 이용한 증명민원 중 주민등록등·초본과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의 수수료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상위법 개정 등에 따라 각종 수수료를 정비한 사항으로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적절하게 처리한 것으로 사료됨